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자료 제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新旧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 편집자 주 —

1. 개정이유

팜 오일을 생산한 후 버려지는 팜 나무의 부산물인 팜 껍질, 왕겨 찻겨 등 농업부산물 등 식물성잔재
물과 사업장 가연성폐기물 등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촉진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향상시키고, 고품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폐
자원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재활용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회수 대상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개정)

1) 에너지회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열 등을 회수하는 것으로, 에너지회수
대상시설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명확히 함

나.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목재펠릿 사용시설을 확대하고,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시설
은 사용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 2)

1) 고품연료제품의 원료가 폐기물임에 따라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도 폐기물처리시설 성능에 준
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으나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 및 관리기준이 없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

2)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이 환경적으로 적정하고 안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함.

다. 고행연료제품 인증제도를 품질검사로 완화 개선하고, 고행연료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3)

1) 고행연료제품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항상 달라지므로 품질검사를 통한 관리가 적정하고, 품질관리는 원료의 수급부터 제조공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제조된 제품의 보관관리가 주요하므로 수입하는 경우도 국내 제조자와 동일한 규정 적용

2) 고행연료제품 인증제도를 품질검사로 개선하고, 수입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라.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제조 및 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스스로 고행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제25조의5)

1)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행연료제품이 제조 및 유통될 경우 환경오염 및 사용시설 망실 등 영향이 커, 부적합한 고행연료제품을 제조 수입 행위는 엄단하고, 사업자 스스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고행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통해 적정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및 수입자에게 스스로 제조 유통하는 고행연료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품질검사제도 도입

마. 고행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및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6)

1) 고행연료제품의 원료가 폐기물임에 따라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일반 보일러와 달리 부식 등 시설 노후화가 빨라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2)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이 환경적으로 적정하고 안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함

바. 폐바이오매스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확대하고 국내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입절차를 마련함(안 제25조의7 및 제25조의8 신설)

1) 외국에서 발생하는 식물성잔재물 중 고행연료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여 발전사업자 등이 RPS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절차 등을 마련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발생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에 영향이 적은 식물성잔재물 중 고행연료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신고 품질검사 등 수입절차를 마련함.

사. 수입된 폐바이오매스 고행연료제품 등이 방치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이의 적정처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집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9)

1) 수입한 고품연료제품이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기물화 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개연성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수입된 고품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 이를 대집행할 근거를 마련함.

아. 폐자원에너지원의 제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0)

1)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의 제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 외국의 동향 조사,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고 기업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 홍보도 중요하므로 동 업무를 지원할 지원센터를 둘 필요가 있음.

2)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 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할 지원센터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폐자원에너지원의 관련 정보(제조 수입 사용, 품질표시, 기술현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11)

1) 폐자원에너지원의 생산 수입 판매 등 에너지원으로의 이용실태와 이용의 적정성 확인, 제조 수입 사용자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

2) 폐자원에너지원에 관한 각종 통계,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 권리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의12)

1) 양도 양수, 합병,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품연료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시설, 행정 처분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둬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39조의2, 제39조)

1) 고품연료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시 사업자 등이 범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팀(전화 : 02-2110-7726 또는 7729, FAX : 02-507-7654, 전자우편 : y2236@korea.kr)로 문의

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로 하고,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을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로 한다.

제25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품연료제품 중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서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경우
- 2.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시설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고품연료제품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를 받은 자는 사용금지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동일시설에서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고품연료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그 품질을 검사받아야 한다.

② 고행연료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자는 고행연료제품의 품질유지·관리·보관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품질검사기관에게 제조·수입된 고행연료제품이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고행연료제품에 대한 시료채취 수, 검사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목재펠릿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의4(고행연료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고행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행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2.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조·수입한 고행연료제품이 매 3년마다의 누적 검사결과 6회 이상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의5(고행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행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고행연료제품에 대한 품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품질검사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과 제25조의2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또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정기검사의 절차·방법, 검사대상 항목 및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7(고행연료제품의 수입) ① 고행연료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고행연료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40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성잔재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에 한한다.

③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한 자는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고�형연료제품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내 폐자원 또는 폐자원에너지의 수급상황
2. 수입 식물성 고�형연료제품의 환경적 유해성
3. 실수요자의 시설용량 등을 감안한 수입량의 적정성 여부

⑤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을 대행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8(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이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지를 확인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수입되는 고�형연료제품의 조사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를 한 자(수입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요청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
2.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의10(폐자원에너지원 지원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 또는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폐자원에너지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폐자원에너지원 기술평가 지원단의 설치·운영



2. 폐자원에너지원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3. 폐자원에너지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4. 폐자원에너지원의 청정개발체계에 관한 연구·지원
5. 고품연료제품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의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 지원
6. 해외에서 폐자원 이용실태 조사 및 생분해성 고품연료제품 수입 관련 업무 수행 및 지원
7. 폐자원에너지원 유통·이용 및 폐자원에너지원 시설 관련 실태조사, 선진사례조사 및 사례 보급
8. 폐자원에너지원 관련 교육·홍보
9.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원 촉진·육성·기술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11(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화 관련 정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수입·사용하는 자에 관한 사항
2.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생산 및 이용 현황
3. 고품연료제품 품질기준 및 표시에 관한 운용실태
4. 수입된 고품연료제품의 수입·공급·이용 현황
5. 폐자원에너지원 기술개발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
6. 폐자원에너지원 전문인력·기술인력의 현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12(전산정보의 입력·조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생산·수입·판매·사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고보조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중 고품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매립가스·바이오가스를 생산 또는 소각시설의 여열을 회수·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소각시설의 여열을 회수하는 자

4. 고행연료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행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로부터 5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제25조의2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 신고자 또는 제25조의3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제조 수입자가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이나 고행연료제품 제조 수입에 관한 사항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검사, 품질표시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제5호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② 국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자원에너지원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시·도 간 폐자원에너지원 시설 설치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사업자와 공동 투자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이용·변환 등의 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시설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

10의3. 제25조의3에 따라 고행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자

10의4.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수입신고를 한 자

다만, 제25조의12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산림청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의2 중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를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수입금지
2.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 시설의 사용금지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한 자
 2.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수입의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기간 중에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한 자
 3.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한 자
-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외의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3.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거부한 자
4.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사용한 자
5. 제25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형연료제품 수입을 대행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대여한 자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2.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 제25조의1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삭제하며,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 8.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7. (생략)</p> <p>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에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p> <p>9.~17. (생략)</p>	<p>제2조(정의) —————.</p> <p>1.~7. (현행과 같음)</p> <p>8.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p> <p>9.~17.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의2(폐기물 고품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품(固形)연료제품(이하 “고형연료제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5조의2(폐기물 고품연료제품의 사용시설) ① —————. 다만, 고품연료제품 중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서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경우</p> <p>2.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p>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25조의3(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품질·등급의 유지·관리, 제조·저장·사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품질·등급 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품질·등급을 준수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유통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p> <p>②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p>	<p>③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시설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년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사용금지를 받은 자는 사용금지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동일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p> <p>제25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그 품질을 검사받아야 한다.</p> <p>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자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유지·관리·보관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품질검사기관에게 제조·수입된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④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시료채취 수, 검사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목재펠릿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은</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개정안
<p>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③인증기관은 고행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행연료제품을 제조·공급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1항의 검사결과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p> <p>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p>	<p>경우</p> <p>2.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p> <p>3. 제조·수입한 고행연료제품이 매 3년마다의 누적 검사 결과 6회 이상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p>
<p>제25조의5(수수료) 인증기관은 고행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산정기준·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p>	<p>제25조의5(고행연료제품의 품질표시) ① 고행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고행연료제품에 대한 품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품질검사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품질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5조의6(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① 고행연료제품 제조시설과 제25조의2에 따른 고행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또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현	개정안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정기검사의 절차·방법, 검사대상 항목 및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수입) 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고형연료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40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펠릿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성잔재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에 한한다.</p> <p>③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한 자는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고형연료제품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신고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폐자원 또는 폐자원에너지의 수급상황 2. 수입 식물성 고형연료제품의 환경적 유해성 3. 실수요자의 시설용량 등을 감안한 수입량의 적정성 <p>여부</p> <p>⑤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을 대행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제25조의8(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이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지를 확인하고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개정안

<신 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수입되는 고형연료제품의 조사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를 한 자(수입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요청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

2.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10(폐자원에너지원 지원센터)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 또는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폐자원에너지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폐자원에너지원 기술평가 지원단의 설치·운영

2. 폐자원에너지원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3. 폐자원에너지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4. 폐자원에너지원의 청정개발체계에 관한 연구·지원

5.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의 실태조사 및 관련 업무 지원



현행	개정안
<p>〈신 설〉</p>	<p>6. 해외에서 폐자원 이용실태 조사 및 생분해성 고품연료 제품 수입 관련 업무 수행 및 지원</p> <p>7. 폐자원에너지원 유통·이용 및 폐자원에너지원 시설 관련 실태조사, 선진사례조사 및 사례 보급</p> <p>8. 폐자원에너지원 관련 교육·홍보</p> <p>9.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원 촉진·육성·기술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5조의11(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원 관련 정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수입·사용하는 자에 관한 사항 2. 폐자원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생산 및 이용 현황 3. 고품연료제품 품질기준 및 표시에 관한 운용실태 4. 수입된 고품연료제품의 수입·공급·이용 현황 5. 폐자원에너지원 기술개발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 6. 폐자원에너지원 전문인력·기술인력의 현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개정안
<p>(신 설)</p>	<p>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5조의12(전산정보의 입력·조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생산·수입·판매·사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고보조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중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매립가스·바이오가스를 생산 또는 소각시설의 여열을 회수·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소각시설의 여열을 회수하는 자 4.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자 <p>② 환경부장관·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행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조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로부터 5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5조의13(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제25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신고자 또는 제25조의3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 수입자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나 고형연료제품 제조 수입에 관한 사항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검사, 품질표시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현행	개정안
<p>제35조의2(재정적·기술적 지원) 국가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4. (생략) 〈신 설〉</p>	<p>제 35조 의 2(재정 적 · 기 술 적 지 원) ① 국 가 는</p> <p>1.~4. (현행과 같음)</p> <p>5.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사용하는 시설의 설치</p>
<p>5. (생략) 〈신 설〉</p>	<p>6.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시·도 간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p>
<p>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국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사업자와 공동 투자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이용·변환 등의 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시설설치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p>
<p>1.~10. (생략) 〈신 설〉</p>	<p>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p> <p>1.~10. (현행과 같음)</p>
	<p>10의2.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고품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p> <p>10의3. 제25조의3에 따라 고품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자</p>